

##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(스캔) 제출 인정 조건

국가	인정 조건
한국	별도 조건 없이 인정
브루나이	인정. 다만 원본 CO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.
캄보디아	인정. 원본 CO는 ATIGA와 아세안+1 FTA의 경우 4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.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. ※ 제공 중. 관세청 사이트( <a href="https://customs.go.kr/co.html">https://customs.go.kr/co.html</a> )에서 확인
인도네시아	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는 CO의 컬러 (스캔)복사본을 인정한다.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90일부터 늦어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본 CO를 제출해야 한다. ※ 인도네시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행 중
라오스	CO의 (스캔)복사본을 인정.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. 본 규정은 라오스에서는 2021년 연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당국으로부터 제공된다. ※ 제공 중. 관세청 사이트( <a href="https://customs.go.kr/co.html">https://customs.go.kr/co.html</a> )에서 확인
말레이시아	인정. 원본 CO는 자국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.
미얀마	CO를 포함한 상업서류의 컬러(스캔)사본 인정. 그러한 서류는 이메일로 전송가능하다. 그러나 원본 CO는 물품이 반출된 후 한 달 이내 또는 국내행 항공편이 재개된 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. 본 규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매달 연장될 수 있음.
필리핀	<i>사본 인정은 확인되었으나,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필요 여부 등은 아직 확인 중</i>
싱가포르	인정
태국	CO의 (스캔)복사본을 인정.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. 본 규정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
베트남	국내 세관이 발급당국의 웹사이트/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으로 CO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(사본)인정. ※ 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입물품의 CO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재무부 지침 발행·시행 중(8.17)